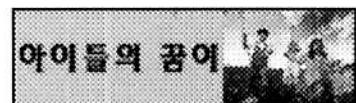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NSL1.64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2001년 2월 5일~9일)와
국회의원 답변문



연합속보



연합속보 · 국제 · 정치 · 북한 · 경제 / 산업 · 사회 · 지방 · 문화 · 스포츠 · 정보 / 과학 · 라이프

- 기사검색
- 자유토론
- 회원가입

주요기사신문사설Top기사정치뉴스국내경제국제경제기관별일정시론날씨내일의 경기

의원 30명 '국보법 개폐 소신'(종합)

한나라당·자민련 의원 일부도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16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보낸 결과, 여야 의원 30명이 '당론에 어긋나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김원웅·김홍신 의원과 최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송석찬 의원은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대로 완전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이 소신 주장 의사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5일까지 각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 결과 273명 중 전화 응답자 4명을 포함, 모두 70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중 국보법 '개정'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이 49명으로 제일 많았고, 시기상조론을 포함해 '개·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과 '완전폐지'를 주장한 의원이 각각 9명씩이었다. 나머지 3명은 별다른 의견 없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개·폐 의견을 보인 58명 중 '당론도 내 의견과 같을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의견을 보인 경우를 빼고 분명한 소신을 밝힌 의원은 '완전폐지'를 주장한 9명과 '개정' 의견을 보인 21명 등 모두 30명에 이르렀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완전폐지를 주장한 김원웅·김홍신 의원 외에도 김부겸·박명안·영근·원희룡·이부영·이성현·조정무 의원 등이 '소신대로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김용갑·김종하·박재욱·신경식·안경률·조웅규 의원 등은 개폐에 시기상조론 등을 내세우면서 반대 의견을 보여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고홍길·김호일 의원은 개정 의견이었지만 '당론에 반하면서까지 주장하진 않겠다'는 등의 단서를 달았으며 박관용 의원은 아예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소신을 이유로 독자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해친다'는 주장을 폈다.

자민련의 경우 송 의원과 달리 안대률·정진석 의원 등은 당론대로 개폐 반대 의견을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 당론에 따른다'는 김태식 의원을 비롯, 당론을 의식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을 뿐 대부분 개폐 의견을 보였다.

인권단체들은 김종필(자민련), 흥사덕(한나라당), 함석재(자민련) 의원 등까지 포함, 응답자가 모두 73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설문조사 같은 것엔 일체 응답 안한다'(김종필)는 등 답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시기상조론'을 반대 의견쪽에 포함시킨 반면 '시기상조론'과 혼동되기 쉬운 '신증론'의 경우 개정 의견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응답을 회피한 대다수 의원들이 정쟁 뒤에 숨어서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탕발림을 늘어놓더라도 그런 정치인들은 경멸하고 철저히 외면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압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ngwon@yna.co.kr (끝)

2001/02/16 16:44 송고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스

보도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진(031-213-2105)/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류은숙(02-741-5363))

제목: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질의서’ 보도 요청

매수: 4매

발신일: 2001년 2월 5일

안녕하십니까?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드높은 요즘,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염원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제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우리 17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평소 당론 뒤에 숨거나 ‘정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사회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기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연말연시 12박 13일(2000년 12월 28일~2001년 1월 9일)의 명동성당 노상 단식투쟁을 결행했던 인권단체들의 국보법 개폐 의지는 정치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각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된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저희 인권단체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널리 보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하 17개 인권단체

수신: 국회의원 전원

발신일: 2001년 2월 5일

매수: 3매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요 일간지들은 거의 날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큰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염원하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대폭 개정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현재까지도 그 논의는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개·폐의 가능성은 가능해보기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에게 별지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 당론 뒤에 숨거나 '정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사회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듯 비쳐지고 있는 의원님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90년대 이후 남북간의 교류는 점점 활성화되어왔으며, 작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 접촉·교류행위를 처벌하는 여러 조항들이 결정적으로 존재의미를 잃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중심은 제7조(찬양·고무)의 문제로 집약되게 됩니다. 실제로 98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90% 이상이 7조 위반이며, 구속자 중 실형 선고율이 6% 미만(2000년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조항이 사소한 사건들에 대하여 얼마나 혹심하게 남용되고 있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7조 삭제를 요구하는 건 이 7조가 운용을 잘하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7조를 적용하는 것은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인권단체의 견해에 대한 의원님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한 응답은 **2월 9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결과는 우리 인권단체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든 아니든 국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 문의 및 답변서 보내실 곳: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전자우편: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 1> 질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②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③ 완전폐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 공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보도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진(031-213-2105)/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류은숙(02-741-5363))

제목: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응답결과(1차)

매수: 17매

발신일: 2001년 2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응답 결과(1차)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연일 찬물을 끼얹고 있는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 입장을 묻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권단체들은 평소 당론 뒤에 숨거나 '정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사회의 근본적인 인권문제인 국보법 개폐 문제를 외면하는 듯 비쳐지고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15일까지 공개질의서를 각 의원실에 네 차례 팩스 발송하고 연일 전화 시위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수일간의 전화 시위를 통해 우리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바에 대해 대답할 자세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응답을 회피한 의원들이 정쟁 뒤에 숨어서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탕발림을 늘어 놓는다해도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경멸하고 철저히 외면할 것입니다.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인권단체들의 압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총 273명 중 서면응답 66명, 전화응답 7명(합계 73명)
응답자 73명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 반대(시기상조론도 반대에 포함): 9명

김용갑/김용환/김종하/박재욱/신경식/안경률/안대륜/정진석/조웅규 / [redacted]

개정: 49명

강숙자/강현욱/고진부/고홍길/김근태/김덕배/김동욱/김명섭/김민석/김방림/김부겸/김영환/김옥두/김정숙/김충조/김태홍/김호일/남궁석/문석호/박관용/박명환/박상규/박승국/박주선/송영길/송훈석/신기남/심재철/안영근/원희룡/유삼남/윤철상/이강래/이낙연/이미경/이부영/이성현/이재정/이정일/임채정/장성원/장영달/장정언/정동채/정범구/정장선/정철기/조정무/최재승

개정의사를 표한 의원들이 수정 내지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2조(반국가단체) 수정 및 삭제 의견: 27명

7조(고무찬양) 수정 및 삭제 의견: 46명

10조(불고지죄) 수정 및 삭제 의견: 36명

18조(참고인 구인·유치) 수정 및 삭제 의견: 8명

19조(구속기간 연장) 수정 및 삭제 의견: 8명

21조(상금) 수정 및 삭제 의견: 8명

완전폐지: 9명

김경천/김성호/김원웅/김홍신/김희선/송석찬/신계륜/이창복/장성민

기타: 6명 김종필/김진재/김태식/하순봉/함석재/홍사덕

당론에 반하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겠다는 의원(당론이 자신의 의사와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견은 제외하고 분명한 소신을 밝힌 의원만 명기):
30명 고진부/김경천/김근태/김덕배/김민석/김부겸/김성호/김원웅/김태홍/김홍신/김희선/문석호/박명환/박주선/송석찬/송영길/송훈석/신계륜/신기남/안영근/원희룡/이미경/이부영/이성현/이정일/이창복/장성민/정범구/정철기/조정무 ✖ 정장선/심재철 (추후 전원노
선수장)

국보법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의견: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보법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래 의원들의 의견은 다르므로 열거함

정진석(자민련, 공주·연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지지하는 다수의 인권 보장에 국가보안법이 기여”

고홍길(한나라, 분당갑):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침해는 없다고 봄”

김용갑(한나라, 경남 밀양): “과거 정권 시절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으로 남한의 인권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나”

조웅규(한나라, 전국구):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민

정부 이후 악용사례는 거의 없다. 인권향상을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권위원회'에 서 이를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될 것이다."

김용환(희망의 한국신당 대표, 충남 보령 서천): "과거 법 운용자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었던 일이 있었으나, 민주화된 현재 법 집행자의 의지로 침해의 소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무응답자 명단:

이희규/임인배/임종석/임진출/임태희/장영신/장재식/장태완/전갑길/전용원/
전용학/전재희/정근환/정대철/정동영/정몽준/정문화/정병국/정세균/정우택/
정의화/정인봉/정재문/정창화/정형근/조부영/조성준/조순형/조재환/원철희
유성근/유용태/유재건/유홍수/윤경식/윤두환/윤여준/윤영탁/윤한도/이강두
이규택/이근진/이만섭/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상수/이상의/이성현
이양희/이연숙/이완구/이용삼/이원성/이원창/이원형/이윤성/이윤수/이인기
이인제/이재선/조한천/조희욱/주진우/천용택/천정배/최돈웅/최병국/최병렬
최선영/최연희/최용규/추미애/하순봉/한승수/한화갑/함승희/허운나/허태열
현경대/현승일/홍재형/황승민/황우려/심규철/심재권/심재철/안동선/안상수
안택수/엄호성/오세훈/오장섭/원유철/이재오/이재창/이종걸/이주영/이한구
이한동/이해봉/이해찬/이협/이호웅/이희창/이훈평/김택기/김학송/김학원
김한길/김형오/김홍일/김효석/나오연/남경칠/도종이/맹형규/목요상/문화상
민봉기/박관용/박광태/박근혜/박병석/박병윤/박상천/박상희/박세환/박시근
박용호/박원홍/박인상/박종근/박종우/박종웅/박종희/박주천/박창달/박현기
박혁규/박희태/배기선/배기운/백승홍/서정화/서청원/설송웅/설훈/손태인
손학규/손희정/송광호/송영진/신영국/신영균/신현태/강삼재/강성국/강신성
강운태/강인섭/강재섭/강창성/강창희/곽치영/권기술/권오을/권철현/권태망
김경재/김광원/김기배/김기재/김기춘/김덕규/김덕룡/김낙기/김만제/김무성
김문수/김성순/김성조/김영구/김영배/김영일/김영진/김영춘/김용균/김용학
김원기/김원길/김윤식/김일윤/김종호/김진재/김찬우/김태호/최명현/박양수

<별첨 1> 질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②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③ 완전폐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 공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별첨 2> 국회의원 답변 원문

1. 강숙자(민국, 전국구)

- 개정 : 시대 변화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표결의 기준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 최우선 기준이라 생각

2. 강현욱(민주, 전북 군산)

- 개정 : 시대 상황 변화와 대북관계 진전으로 앞으로를 대비한 법 개정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법의 독소적 조항을 변수와 연계한 개정 필요
- 7조
- 7조는 법의 적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민주당은 국보법을 개정키로 당론이 확정되어 있음

3. 고진부(민주, 서귀포 남제주)

- 개정 :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목적과 50여년이 지난 지금 시기의 역할 변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전례와 소지가 많음.
- 2조 “반국가 단체”의 정의, 7조 “찬양 고무 등 행위 규정”, 10조 “불고지죄 규정” 등
- 인권 침해 전례도 많고 가능성도 높다.
- 당론에 반하여 소신을 주장할 의사가 있으나, 우리당의 일관된 당론은 국보법 개정

4. 고흥길(한나라, 분당갑)

- 개정 : 일부 규정은 과도한 법 적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 7조, 10조
-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침해는 없다고 봄
- 당론에 반하면서까지 하지 않겠다.

5. 김경천(민주, 광주 동구)

- 완전 폐지 : 남북정상회담 성사, 화해와 교류 협력의 증대, 통일민족의 비전창출이라는 시대상황 변화의 반영과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이권을 유린해온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2조 정부 참칭, 7조, 10조 등은 반드시 삭제 또는 개정
-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전근대적 법률
-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여 당론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대로 주장할 것임

6. 김근태(민주, 도봉갑)

- 개정 : 냉전은 끝났다. 한반도의 평화 추구도 진행되고 있다. 70,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법이며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제 인권관련기구(UN, 앤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인권보고) 등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창원에서 우리의 국보법을

다루고 있다.

- 7조, 10조, 18조, 21조 상금 조항
- 인권 침해
- 평민당 시절부터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입법이 당론화되는 등 이미 우리당의 당론이며, 크로스보팅을 토한 자유투표를 통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가 있다.

7. 김덕배(민주, 고양 일산을)

- 개정
- 7조
-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다.
- 소신 주장

8. 김동욱(한나라, 경남 통영 고성)

- 개정 :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이나 남북 경협 추진 등 남북한간의 외형적 변화가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에서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내부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일부 문제 조항을 제한적으로 개정.
-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죄 등 불확정 개념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

9. 김명섭(민주, 영등포갑)

- 개정 : 분단의 상황과 첨예한 국민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만큼 독소, 악용 조항만 삭제, 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함
- 7조, 10조 개정
- 침해 요인이 있고 악용 사례도 있다고 본다.

10. 김민석(민주, 영등포을)

- 개정 :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먼저 독소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하고 대체법과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2조 '정부 참칭' 삭제, 10조, 19조, 18조 2항, 21조 2항 삭제
7조 수정안
 -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를 이름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11. 김방림(민주, 전국구)

- 개정 : 7조, 10조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 필요

-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 당론과 개인적 소신이 다르지 않음

12. 김부겸(한나라, 경기 군포)

- 개정 :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적 환경, 비민주적, 인권침해요소, 우리 사회의 체질 변화
- 7조 삭제, 10조 불고지죄 개정, 2조 '정부 참칭-반국가단체' 개정
-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 소신 주장

13. 김성호(민주, 강서을)

- 완전 폐지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14. 김영환(민주, 경기 안산갑)

- 개정 : 인권침해와 변화된 남북관계에 부적절
- 2조 중 정부 참칭 삭제, 7조 부분 또는 완전 삭제, 10조 삭제
-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사상과 인권을 침해하였다
- 개폐 시기에 논란이 있으나 당론이 국보법 개정이므로 개인적 소신과 당론이 배치되지 않음. 당내 토론을 거쳐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임

15. 김옥두(민주, 영암 장흥)

- 개정 : 정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악용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2조, 7조, 10조
- 사상,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음
- 당론에 따라 개정 추진

16. 김용갑(한나라, 경남 밀양)

- 절대 반대 :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보위법률로서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검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일방적 개정은 안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되어야 한다.
- 과거 정권 시절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으로 남한의 인권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나

17. 김용환(희망의 한국신당 대표, 충남 보령 서천)

- 동법의 역사성이나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에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 지거나 변화의 증좌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 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 과거 법 운용자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었던 일이 있었으나, 민주화된 현재 법 집행자의 의지로 침해의 소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18. 김원웅(한나라, 대전 대덕)

- 독소 조항 대폭 개정 또는 완전 폐지 : 냉전 체제의 마지막 유물이므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이미 사문화했고 국가안보는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가능하고 자유민주주체제를 훼손해온 법이므로
- 인권침해
- 소신 주장

19. 김정숙(한나라, 전국구)

- 개정 :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되므로 합리적 개정이 타당
- 7조
- 법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나 법의 자의적 확대 해석이나 운영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봄

20. 김종하 (한나라, 창원갑)

- 절대 반대 : 북한의 전쟁 포기 선언이 없음, 북한의 헌법 노동당 규약 형법 등 관련 조항 개정 의사가 없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 논의가 필요
- 일부 조항의 악의적 이용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 국보법과 중용한 문제일수록 '당론'의 결정에 따라야 함

21. 김충조(민주, 여수)

- 개정 : 인권 침해
- 불고지죄(10조), 찬양고무죄(7조)
- 인권 침해

22. 김태홍(민주, 광주 북구을)

- 개정 : 인권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
- 2조, 7조, 10조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23. 김호일(한나라, 마산 합포)

- 개정 : 남북한이 현재 대치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체제수호와 안보상 보안법이 어느 정도 필요, 북한은 여전히 우리보다 엄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법안의 개정에 상당한 검토가 요구됨. 기존 법률과 충복성, 위헌성, 시대착오성, 인권남용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
- 10조 개정 필요
- 어느 정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체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 절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자제되어야 한다.
- 당론과 국민 여론, 시기 등을 고려해 검토.

24. 김홍신(한나라, 전국구)

- 완전폐지 평화공존과 인권 실현 통일을 위한 전향적 자세 요구됨
-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 개인적 소신을 주장

25. 김희선(민주, 동대문갑)

- 완전폐지 : 먼저 다른 법들과 중복된다. 제7조 '고무 찬양 동조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는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한 특별형법조항들이 국보법 긴으을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보법 제 4조의 경우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여 각 항에서 < 형법 92조 내지 97조, 99조, 250조2항, 338조 또는 340조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벌한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 전달하거나 중계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115조, 119조 1 항...340조1항,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돼있어 형법과 중복돼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보법 제7조의 규정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조항으로 애초부터 잘못된 법적용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법률과 중복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대북안보문제와 관련있는 법적용은 형법등 기존법률에 따라 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타 법률로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
- 인권침해가 있다. 1997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의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통계를 보면 전체의 97%가 '표현'의 문제와 관련있는 7조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상대로 한 법이라기보다 국민의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보법이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유지를 빙자한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 당론이 내 소신과 다르게 결정되더라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겠다.

26. 남궁석(민주, 용인갑)

- 개정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남북관계가 동법을 개정할 당시보다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조정
- 2조와 7조는 개정. 10조, 18조 2항, 19조, 21조 2항과 3항은 삭제.
- 민주당 당론이 국보법 개정이므로 본인의 의견과 일치

27. 문석호(민주, 충남 서산 태안)

- 개정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북측과 접촉한 인사중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팬찮다는 식의 형평성을 잃은 법적용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2조, 7조 4항과 5항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28. 박관용(한나라, 부산 동래)

- 개정 필요 : 남북 간의 이중적 구조를 인정하면서 법의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 7조(찬양고무 등)
-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탄압하는 권력을 ***** 노력해야지 법 자체를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당론에 반하기 보다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소신이라는 이유로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해친다고 봄

29. 박명환(한나라, 마포갑)

- 개정 :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 노동당 규약과 연계하여 개정하느 것이 바람직
- 2조, 7조 개정, 10조 삭제, 18조와 19조 관련 조항은 수정 삭제.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30. 박상규(민주, 부평갑)

- 개정 : 찬양 고무나 불고지죄 등은 반인권적이며 사실상 국가보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족쇄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
- 인권 침해
- 당론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당론을 결정하느 과정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과 통일을 위하여 단일한 입장을 표명할 것임.

31. 박승국(한나라, 대구 북구갑)

- 개정 :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데 남한만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7조는 범죄구성요건을 강화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적용을 완화하고, 10조는 폐지
- 위 조항이 대표적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가적 현실을 감안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
- 당론도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에 임할 것이다

32. 박재욱(한나라, 경북 경산 청도)

- 남북한 50년의 극한 대체의 역사속에 살아온 국민의 정서로는 어느 일방적인 양보와 보안법 개폐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남북한 정상이 서로 방문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아질 때, 단계적으로 양보하고 거기에 알맞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33. 박주선(민주, 화순보성)

- 개정 : 개폐 대상인 7조 등이 인권 침해가 있으므로
- 7조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34. 송석찬(자민, 대전 유성)

- 완전 폐지 :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남북경제협력 수행 등에 장애가 되고 현행 헌법이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 세계화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 유지 및 인권 유린의 악법이기 때문
-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나 개정시엔 2조와 7조, 8조 등을 개정
- 그동안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이 법의 악용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신 주장

35. 송영길(민주, 인천 계양)

- 개정 :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의 산물을 청산하고, 민주-인권 국가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평화 정착과 상호 체제 인정의 6·15 남북 공동 선언 이념에 따라 개정 필요
- 2조 정부 참칭 삭제, 7조 찬양고무선전은 부분삭제, 7조 4,5,6,7항은 삭제, 10조와 19조 그리고 21조 2항과 3항은 삭제
- 7조 “찬양고무동조”는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 당론에는 구속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존재. 개개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소신 있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 국보법 개폐에 대한 당론은 권고적 당론일 뿐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36. 송훈석(민주, 속초 고성 양양 인제)

- 개정 : 시대 상황과 남북교류 증진에 맞게
- 7조 개정, 10조 삭제
- 약간의 인권 침해
- 소신을 주장할 의사가 있다

37. 신경식(한나라, 충북 청원)

- 절대 반대 : 북한도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등이 고쳐지는 등의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38. 신계륜(민주, 성북을)

- 완전 폐지
- 2, 4, 7조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39. 신기남(민주, 강서갑)

- 개정 : 시대에 맞지 않음, 남북 교류 방해, 인권 침해
- 2, 7, 10조 개정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40. 심재철(한나라, 안양 동안)

- 개정
- 2조 중 정부 참칭

41. 안대륜(자민, 전국구)

- 절대반대(시기 상조) : 여건 미성숙, 북한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처리, 예컨대 평화협정 체결이나 노동당 규약 변경 등의 조치로써 남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느낌을 줘야
- 인권침해 소지는 있다. 국보법은 국가체제 유지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여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42. 안영근(한나라, 남구을)

- 개정 :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상 현상황에서의 폐지는 어려우므로 '개정'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 2조, 7조, 10조 개정 또는 삭제
- 인권 침해
- 당론이 본인의 의사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소신대로 할 것임.

43. 원희룡(한나라, 양천갑)

- 개정 : 인권탄압에 악용될 수 있거나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
- 2조 정부참칭, 10조 삭제. 7조는 법적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현재의 법조항은 인식범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케함으로 목적범만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함. 18조, 19조는 일반형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정 추진.
- 국회에서 국보법 문제로 토론하거나 표결을 할 경우 '국보법 개정'이라는 소신을 지킬 것임. 또한 국보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도록 요구할 생각임.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했고 현재 마련 중에 있음.

44. 유삼남(민주, 전국구)

- 개정 :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법 개정 필요
- 2조 삭제, 7조와 10조 개정
- 인권침해는 법 운용상의 문제다
- 당론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당론에 따르겠다.

45. 윤철상(민주, 전국구)

- 개정 : 현 남북 대치 상황과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폐지는 무리, 따라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큰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

- 7조
- 일부 인권 침해가 있음

46. 이강래(민주, 남원 순창)

- 개정 :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권신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다만 국민의 전체적인 합의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개정 수준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임.
- 2조와 10조 삭제, 7조 개정.
- 인권 침해
- 국민의 인권과 당론이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47. 이낙연(민주, 전남 함평 영광)

- 개정 :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
- 2조 중 정부 참칭과 10조 삭제, 7조 수정 검토
- 인권 침해
- 보안법 개정이 당론이자 개인적 소신

48. 이미경(민주, 전국구)

- 개정 : 원칙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법의 개폐문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합의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특히 법률의 개폐문제로 국민적인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개정이 타당
- “세정치국민회의안” + 7조 삭제
- 인권을 침해
- 소신 주장

49. 이부영(한나라, 강동갑)

- 개정 : 현재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
- 2조 중 ‘정부참칭’ 삭제, 7조와 10조 삭제
-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 당론에 반해 소신을 주장할 의사가 있으며,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50. 이성현(한나라, 서대문갑)

- 개정 : 인권 침해 조항 삭제
- 2조, 7조, 10조
- 일부 조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
- 일단 당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가급적 당론에 따른다. 그러나, 국보법의 경우 개인 소신을 따른다.

51. 이재정(민주, 전국구)

- 개정 : 일부 오용, 악용되어지는 내용을 수정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임. 따라서 현재 개정하자는 의견만으로도 보수세력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 2조 수정, 7조 대폭 수정 또는 폐지, 18조 2항, 19조, 21조 2항과 3항 삭제 ;
- 인권 침해
-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크로스 보팅을 추진

52. 이정일(민주, 해남 진도)

- 개정
- 7조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53. 이창복(민주, 원주)

- 완전 폐지 : 기존 법률과 거의 중복, 어떤 나라에도 이런 법률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국가안보 운운하거나 시기상조나 개정이 아닌 인권 침해로 악용되고 있어 폐지 마땅. 본인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준비하다가 다른 의원실에서 먼저 내는 바람에 "서명"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끝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본인은 노력할 것.
- 인권 침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의 하나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음. 법 자체의 애매모호, 불명확함 때문에 최형법정주의에 위배.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추, 확장되고 있음.
-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당론과 관계없이 밝혀야 한다.

54. 임채정(민주, 노원을)

- 개정 : 남북관계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일부 조항(7조)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
- 2조 '정부참칭' 부분 삭제, 7조 전면 개정, 10조 삭제, 18조 차고인 구인 유치 조항 삭제, 19조 구속기간 연장 삭제, 21조 2항과 3항 포상 조항 삭제
- 현행 국보법의 7조 '찬양 고무' 조항은 대표적인 반인권 조항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조항임. 10조도 마찬가지.
- 민주당은 당론으로 '국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55. 장성민(민주, 서울 금천)

- 완전폐지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56. 장성원(민주, 전북 김제)

- 7조와 10조 삭제
- 개정

57. 장영달(민주, 전주 완산)

- 궁극적으로 폐지, 남북이 대치중인 현시점에서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2조, 7조, 10조 개정
-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체와 양립할 수 없는 법이라 생각, 국보법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으며, 이제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 반드시 개폐되어야 함.

58. 장정언(민주, 북제주)

- 개정 :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첫째, 남북이 극한대결을 하던 시기에는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 않다.
둘째, 군사 정권 시절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
셋째, 국보법의 자의적 적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나먹고 나머지는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
그러므로, 이미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제2조 : 국가참칭이라함에 칭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국가로 인정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조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이 UN에 동시가입을 한 상태이며, 지금 북한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수교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는 “북한”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법은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7조 : 찬양 고무 선동에 대한 조항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일례로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란 베스트셀러가 몇 년간 법적으로 불순서적이냐 아니냐는 공방에 놓여 있는 데, 그 소설이 찬양 고무 선동에 대한 서적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책을 산 모든 이들이 7조 5항의 표현물 소지죄로 법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에 따라 법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
- 제10조 : 불고지죄는 인륜에 어긋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내 가족이 죄를 범한 걸 알면서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같이 처벌이 된다고 함은 물론 감형이란 단서가 있기는 하나 인간관계를 말살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어긋난다고 생각.
- 위에 언급한 7조와 10조에 대한 의견에서 인권 침해
- 우리 당의 당론도 일부 개정으로 임하고 있는 바 같이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다.

59. 정동채(민주, 광주 서구)

- 개정 :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의 전면적인 개정.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법 개정
- 2조, 7조 10조 개정
- 인권을 침해한 편이었다.
- 입장 표명 유보

60. 정범구(민주, 고양일산갑)

- 개정 : 남북화해 및 교류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북용이기 보다 대내용 인권탄압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
- 2조 정부 참칭, 10조 18조 2항, 19조 21조 2항과 3항 삭제
7조 삭제 및 단체 구성 목적법에 한해 처벌
- 인권 침해
- 소신 주장

61. 정장선(민주, 평택을)

- 개정 : 동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남북간의 협력이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먼저 7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 과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62. 정진석(자민, 공주 · 연기)

- 추후 개정 : 불필요한 남남갈등, '보혁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안보의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 우려. 국민적 합의 토대 위에서 상호주의적 개정 노력 필요
- 7조(고무, 찬양)
-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지지하는 다수의 인권보장에 국가보안법이 기여

63. 정철기(민주, 전남 광양 · 구례)

-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함
- 7조 1항과 10조 삭제
-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다고 봄
- 있음

64. 조웅규(한나라, 전국구)

- 절대 반대 : 국가보안법은 6.25 전쟁을 거쳐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국가보위 법률이다. 즉 국가안위와 민족생존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법이다. 남북관계가 의견상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고, 남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민족반역죄로 처단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민정부 이후 악용사례는 거의 없다. 인권향상을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철저히 가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될 것이다.
- 개정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65. 조정무(한나라, 경기 남양주)

- 개정 : 국가보안법은 남북평화협력의 시대에 맞게 손질되어야 하고 과거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부른 독소 조항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2조 중 정부 참칭 삭제, 7조 수정, 10조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삭제
- 인권침해
- 당론에 반하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정에 찬성

66. 최재승(민주, 전국구)

- 개정 : 남북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국가이며,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상호간 국가적 실체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음.
- 2조 부분삭제, 7조 수정, 10조 삭제, 18조 2항과 19조, 21조 2항과 3항 삭제.
- 변화된 남북관계와 항상된 인권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 당론으로 할 것인지 의원 소신 투표로 할 것인지부터 당내 의견을 수렴. 다만 총재님을 비롯하여 대다수 의견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당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인만큼 당론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이하 전화응답

67. 김종필(자민, 전국구)

- 설문조사 같은 것엔 일체 응답 안한다.

68. 김태식(민주, 전북 완주 임실)

- 무조건 당론에 따른다

69. 홍사덕(한나라, 전국구)

- 국회부의장 신분이라 답변 못한다

70. 함석재(자민, 충남 천안을)

- 답변 못한다.

71. 하순봉(한나라, 경남진주)

-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72. 김진재(한나라, 부산금정)

-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73. 안경률(한나라, 부산해운대, 기장을)

- 존속입장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공개 질의에 대한 의견서

1. 국회의원 김용환 (희망의 한국신당 대표, 충남 보령 서천)

2.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동법의 역사성이나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에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화의 증좌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 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3.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과거 법 운용자에 의하여 인권이 침해되었던 일이 있었으나, 민주화된 현재 법 집행자의 의지로 침해의 소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수신 : 인권운동 사랑방

참조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담당자

발신 : 김용환 의원실 (02-788-2576, fax 02-788-3220)

총 2면(표지포함)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장정언

소속 정당: 새천년민주당

지역구 : 북제주군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에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2)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첫째, 남북이 극한 대결을 하던 시기에는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다.

둘째, 군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의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미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다뤄져야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

(3) 완전 폐기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조 - 제2조에서 국가 창창이라함에 칭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하는것인데, 국가로 인정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시대조류와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의 UN에 동시가입을 한 상태이며, 지금 북한은 유럽의 여러국가와 수교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는 "북한"을 인정을 못한다는 법은 시대흐름과 떨어진기라 볼수있다.

◎ 제7조- 찬양·고무·선정에 대한 조항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일례로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란 베스트셀러가 몇 년간 범적으로 불순서적이나 아나나라는 공방에 놓여있는데, 그 소설이 찬양, 고무, 선정에 대한 서적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책을 산 모든이들이 제7조 5항에 표현물 소지죄로 법조함에 적용된다고 볼수 있다. 이런식으로 해석에 따라 법적용이 될 수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

◎ 제10조 - 불고지죄는 인종에 어긋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내가족이 죄를 범한 걸 안면서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같이 처벌이 된다고 학은 물론 감형이란 단서가 있기는 하나 인간관계를 말살 할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는게 어긋난다고 생각 한다.

65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렇다. 3번에서 언급한 제10조와 제7조에 대한 의견에서 침해라고 생각한다.

5. 공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우리당의 당론도 일부개정으로 임하고 있는바 같이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다.

불임: 전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숙
 소속정당: 한나라당
 지역구: 경기지역 대표(171)
 나이: 37세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②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이 조직되어야 할 편집성이 혼란으로 아직까지
 난타인다. 생각으로 험악한 개정이 타당화하고 ~~생각된~~ 편집된.

③ 완전폐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7조 개정.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 자체 자체이로 문제가 있었지만, 법의 자의적, 헌법 침해이나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본.

5. 정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
 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64

불임: 질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재우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지역구: 경북 괘산시, 청도군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2)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완전폐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5. 광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6. 남북한 50년의 주한대치의 역사 속에 살아온 주연의 저서로는 어느
일방적인 양보와 보안법 개폐는 안된다며 남북한 정통이
서로방문하고 민음을 바탕으로 신뢰가 살아질때 단계적으로 양보하고
기꺼이 양보해 나가야 개혁되면서 합법화

문서: 정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단하게 이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재숙

주소성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억구: 제2차전쟁

2. 이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전대반대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2. 개정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국민의 윤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불거난 반동적 추측과 예상하기 어렵거나
정체불명의 반동적 성향을 발견

3. 완전폐지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4.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새롭게 주는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정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거나(제거) 10%로 보정(4%)
- 10% 이상 보정(5%~9%)

5.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권리(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Yes

6. 김대중 기본서 이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했 때 귀하는 당론에 뛰바이 주
선대로 보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한 의사가 있습니까?

No

62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이재정(Lee Jae Joung)
- 소속정당 : 새천년민주당
- 지역구 : 전국구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2) 개정

- 일부 오용, 악용되어지는 내용을 수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임. 따라서 현재 개정하자는 의견만으로도 보수세력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조 수정
- 제7조 대폭수정 또는 폐지
- 18조 2항, 19조, 21조 2,3항 삭제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침해하고 있음.

5. 공당의 기본적 의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할 때 귀하는 당론에 반하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당론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크로스 보팅을 추진하겠음.

붙임: 질의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 공개 질의서

1. 간략하게 의원님의 신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 호 일

소속정당: 한나라당

지역구: 경남 마산 합포

2.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절대반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승복학이 권력 태만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가 보안과 안보상 불안정이 어느 정도
증후군이나. 특히 이전에 우리나라 유한 몽골족을 끌고왔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통과 역사와 맞습니다.

② 개정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현대 국가 보안법은 이미 기초의 원칙과 가치를 막론하고 충분히 확장되어
국가보안의 충분성과, 위험성, 시대적 조건, 민족 존엄성 등 고려되어야
기여성이 약하고 부분이 강제하고 유통되거나.

③ 완전폐지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완전 폐지로 시기 상조이므로 승복학은 통일이 되었을 이후이나
가능하라고 봅니다

3.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제 몇 조문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10조(원고지죄)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4.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양심·표현의 자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지만 그보다는 주체의 주체에 대한
기여성이 충분스러운 것 같아서 광활한 자유로 차관되어야 합니다

5. 공당이 기본적 이무·자·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 떨 때 뛰어는 맹군에 반하여 소
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신이 주제의 예로, 시기 등을 뛰어 고려해 전면히 보았습니다